



# 주요심결사례

2003. 2. 2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3독관0179)</p>	<p>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2002. 10월 현재 (주)서브애드, (주)승보광고 등 30개 광고대행사와 역구내, 전동차량 등에 대한 광고대행계약 46건을 체결·유지하면서, 공익상 또는 지하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광고물 등의 철거를 의무화한 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하철역 구내점포 3,428개소에 대하여 설경희, (주)고암실업 등 74개 거래상대방과 임대차계약(13종)을 체결·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설치한 고정시설물은 자기에게 귀속시키면서 이에 대한 보상청구를 금지하였으며, 지하철역 구내 제과판매점 42개소에 대해 (주)텔리스, (주)팡데이 및 (주)모닝벨베이커리 등 3사와 제과판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사로부터 각 3회(2001.11월, 2002.1월 및 2월)에 걸쳐 즉석음료에 해당되는 '에스프레소 커피'의 취급승인을 요청 받고도 승인해주지 않는 등 계약내용과는 달리,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제과판매점 임차인들의 취급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의 취급품목 또는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등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각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3독관0180)</p>	<p>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는 1999. 10월부터 2001. 7월 기간중 에스케이텔레콤(주) 등 7개사와 케이블관로 및 중계기 설치장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신세기통신(현 에스케이텔레콤(주))과는 계약서 제5조제3항에서, 드림라인(주), 부평유선방송(주),</p>	<p>▶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각 거래상대방에게 서면</p>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한솔엠닷컴(주), (주)지엔지텔레콤, 한국전파기지구관리(주)와는 제16조제2항에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하였고, 1999. 8월부터 2002. 9월 기간중 (주)삼화기획 등 5개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삼화기획, (주)에이티엠, (주)스타에드컴, (주)디아이디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주)씨비엠영진애드와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자신이 공익상 또는 지하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광고물 철거비용을 광고대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으며, 1999. 10월부터 2002. 9월 기간중 (주)삼화기획, 오양복, 김현실, 황중석, 이호석, 안명자, 이기철, 주혜숙, 노성환, 김순자, 김순화, (주)디아이디 등 12개 사업자와는 지하철 역내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5조제3항에서, (주)디아이디와는 계약서 제4조에서 임대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연평균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하되 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전년도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한편, 1999. 10월부터 2002. 10월 기간중에는 서석종 등 총 47개 사업자(63개 매장)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9조 또는 제10조 또는 제11조 또는 제12조 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제4항 및 제6항에서 임차인이 변경하여 설치한 기존시설물 중 원형이 훼손되는 고정시설물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이에 대한 보상청구를 금지하는 등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으로 통지토록 함</p>



2003. 2. 2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전남태권도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2002광사1227)	전남태권도협회는 2002. 6. 2.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경희대체육관 대표 이창모의 순천시 지역 8개 체육관 대표가 자신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특별시 서초구태권도협회(회장 고동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311-3호상가 223-가)를 통해 순천공업고등학교(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유도관에서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자 이를 불법 심사로 간주하고 2002. 6. 29.과 2002. 8. 3. 나주시실내체육관(전남 나주시 송월동 소재)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이 중 1명은 제명, 6명은 자격정지 1년, 2명은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2002. 8. 22. 해당 구성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징계내용을 통보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2003. 2. 2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의 거래거절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3독관0183)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는 차내 및 역구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총18건(계약금액 42억원)의 광고대행업체 선정계약 중 2건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광고대행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인근지역 등 다른 지역에 본사 소재지를 둔 광고대행업체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한편, (주)매일신문사, (주)매일애드 등 17개 광고대행업체와 광고대행계약(27건)을 체결하면서, 부착 광고물이 공익상 또는 지하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광고물 철거 비용을 거래상대방인 광고대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또한 대곡역, 진천역 등 10개 역구내 점포 입차인과 임대차계약(12건)을 체결하면서, 입차인이 이행지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보증금 보관기간 동안의 이행지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	▶ 거래거절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각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으며, 대곡역, 성당못역 등 27개 역구내 점포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31건)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해주지 아니하는 거래조건을, 맥슨, 성지정보 등 5개 승차권용지 제작사와는 승차권 용지구매를 위한 구매계약(13건)을 체결하면서, 승차권 인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거래상대방인 승차권용지 제작사가 제작한 승차권용지의 불량 또는 납품지연으로 승차권 판매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기가 결정하고 승차권용지 제작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 대구 지역 광고시장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 업체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2003. 3. 1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광역시서점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2002부사 0694)</p>	<p>(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광역시서점조합은 (주)교보문고 부산점이 2000년 2월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소재 교보생명빌딩에서 on-line영업(인터넷서점)만을 해오다 2001년 9월경에 off-line영업(약 100평 규모의 일반서점)을 시작하였다. 그 후 (주)교보문고가 동 서점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서면) 소재 교보생명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매장을 800평 규모로 확대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피심인은 (주)교보문고의 부산진출(특히 off-line영업)에 따른 지역 영세서점들의 경영악화 등을 우려해 (주)교보문고 서면점의 개업일(2002. 5. 1.) 전후인 2001. 12. 19.~2002. 6. 16. 기간중 총 59회에 걸쳐 (주)교보문고 서면점 앞 등에서 “교보문고 부산진출 반대” 요지의 집회·시위 및 영업중단을 요구하는 실력행사 등을 행하는 한편, 이러한 집회·시위를 전개하기</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위하여 2001. 12. 19~2002. 5. 11. 기간중 자신에게 가입된 소속 서점들의 휴업을 결의하고 동 소속 서점들에게 총 8일간(2001. 12. 19., 2002. 3. 27., 2002. 5. 6~5. 11.) 휴업을 하도록 하는 등 다른 사업자인 (주)교보문고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부산지역 서적소매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2003. 3. 1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SK글로벌(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2 광고1827)	SK글로벌(주)은 2002.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카타로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스마트 학생복 광고를 하면서 「학생복 물려입기 1위 브랜드, 매일경제신문 선정 10대 장수 브랜드 선정 - 20세기를 대표하는 한국의 베스트셀러 브랜드로 선정, 국내 유일의 140여개 유통망 체계, 국가대표 학생복 '스마트」 등과 같이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3. 3.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공업협동조합 등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2003 공동1762)	한국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공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은 2002. 2. 25일부터 운영위원 및 품질정상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정상화단속규정"을 제정하고 비중 14.5kg/m <sup>3</sup> 이하 스티로폼 제품의 생산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원료공급사에게 품질정상화단속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원료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고, 협동조합 경인지회는 2002. 2. 20일부터 과다한 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2단체1598)</p>	<p>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은 2000. 4. 20. “동두천시의 수해상습지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건(1,690백만원, VAT포함)”에 대하여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량을 배정하면서 전체 조합원에게 동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수주활동을 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물량을 배정하였고, 2000. 3. 27. 수주활동을 하여 계약관련 정보를 입수한 (주)선일전기 등 12개 조합원 중에서 2000. 3. 28. 물량배정회의에 참석한 7개 조합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주)선일전기를 주관사로 선정하여 전체 물량의 34.6%를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주)청한중전기, 한미통신공업(주), (주)동아산전 및 (주)일산전기 등 4개 조합원들에게 1/4씩 배정하였으며, 2000. 3. 29. 동두천시가 영상감시장치(CCTV) 우수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함에 따라 2000. 4. 3. 제2차 물량배정회의를 개최하여 시방서(경기도내 업체)상의 적격업체가 아닌 서울특별시내 업체인 합동전자통신(주)을 추가하여 배정업체로 선정하였고, 조합원들간에 배정받은 물량을 여러 차례 양도·양수한 것을 인정하여, 2000. 11. 15. (주)선일전기와 합동전자통신(주)에 최종적으로 재배정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2003. 3. 2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2003단체0294)</p>	<p>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2000. 7. 임시총회 및 제5회 이사회에서 미수납된 회비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고 별도의 회비징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1. 1. 10. 제1회 이사회에서 회비징수 활성화 방안으로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회원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본부에서 차량 1대당 연간 회비인 10,200원(850원/월×12월)을 공제하여 회비로 대체 지급하고,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도 협회로부터 별도 징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공제조합 총회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고, 2001. 3. 8. 공제조합 제2회 총회는 위 결의내용대로 '책임공제계약수수료 지급 시행지침' 중 7. 행정처리사항을 "동 수수료는 반드시 조합원 또는 차량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여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서 "동 수수료는 반드시 조합원 또는 차량관리자에게 지급 및 연합회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여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으로 개정한 후 2001년 예산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공제조합 시·도지부에 시행하였으며, 2001. 4. 4. 위 '책임공제계약수수료 지급 시행지침' 개정내용과 "연합회는 분기별로 공제조합과 책임공제계약수수료 징수현황을 시·도 지부별로 취합하여 연합회비를 정산하고 위 징수실적을 시·도 협회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연합회비 회계처리 요령'을 시·도 협회에 시달하였고,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책임공제계약수수료에서 회비를 징수하여 오고 있으며, 자신의 2002년도 세입예산 1,101백만원 중 80%수준을 책임공제계약수수료에서 징수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회원인 16개 시·도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발간 안내

### 기업의 실무자, 법조계 및 학계 등 공정거래 전문가들을 위한 유익한 길잡이

본 협회에서는 2003년 3월 28일 한국, 미국, EU, 일본 등의 공정거래 심결사례를 심층 분석한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를 발간하였다.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는 공정거래 사건 중 당사자간의 논란이 심했거나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많았던 사례를 범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리하여, 미국, EU, 일본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한 핵심원리와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있다. 특히 본 서는 공정위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번역하여 당사자간의 대립되는 주장, 쟁점에 대한 경쟁당국 및 법원의 판단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및 외국의 심결서(판결문 포함)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목 차

- 제1장 독점 관련 심결사례 비교
  - 제2장 기업결합 관련 심결사례 비교
  - 제3장 공동행위 관련 심결사례 비교
  - 제4장 불공정거래 관련 심결사례 비교
  - 제5장 적용제외 관련 심결사례 비교
- 부록

- I. 주요국의 경쟁법 관련 조문
- II. 국내사례 심·판결문

628면  
정가: 30,000원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준법지원실(☎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